

미합중국
증권 거래 위원회
앞에서

1934 의 증권 거래 조례

발표 번호. 65273 / September 7, 2011

행정적 소송진행

접수 번호. 3-14533

BSK & Tech 주식회사

건에 대한,

피고.

1934 의 증권 거래 조례
제 12(j) 조항에 준하여
행정적 소송진행과
청문회 개최를 명령함

I.

증권 거래 위원회는(“위원회”)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하여,1934 의 증권 거래 조례 (“거래 조례”)의 제 12(j) 조항에 준하여, 피고 BSK & Tech 주식회사를 상대로 행정적 소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보아, 이에, 동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II.

조사 실시 후, 법집행부가 주장하는 것으로는:

A. 피고

1. BSK & Tech, 주식회사 (CIK No. 1446606) 는 거래 조례 제 12 조항에 준하여 위원회에 등록된 증권거래사인,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한, 네바다 (Nevada) 주식회사가 등록취소된 회사이다. BSK & Tech 는 2007 년 12 월 31 일자로 종료되는 12 개월의

기간동안에 2 십 3 만 1 천 달러의 실손실을 보고한, 2009년 1월 23 일자의 10/A 등록 사업보고 양식을 제출한 이래, 여타 다른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태만히 했다. 2011년 8월 26 일자로, 동 회사의 증권 (“BSKT”로 상징됨) 은 OTC 마켓 그룹 주식회사 (“OTC 링크”) 가 경영하는 OTC 링크 (이 전의, “분홍색 종이”) 에 가격이 견적돼 있었고, 8 개의 마켓 메이커를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거래 조례 15c2-11(f)(3) 규정에 준한 “편승”(piggyback) 예외 항목에 적용되었다.

B. 정기적 보고 제출에 태만

2. 이상에서 상세히 거론한대로, 피고는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 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거듭해서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주식회사 재정부서가 정기적 보고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청하며 피고에게 보낸 의무태만에 대한 편지를 무시했거나, 혹은 위원회의 규정이 요구하는대로 위원회에 유효한 주소를 신고, 유지하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와같은 편지를 수취하지 못했다.

3. 거래 조례 13(a) 조항과 그에 준하여 반포된 규정들은 거래 조례 제 12 조항에 준하여 등록된 증권발매인이, 비록 그 등록이 제 12(g)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에 현행의 정확한 정보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특별히, 제 13a-1 규정은 증권발매인이 연례보고를 제출할 것을, 그리고 제 13a-13 규정은 국내 증권발매인이 매 4 분기마다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앞서 전술한 결과로서, 피고는 거래 조례 제 13(a) 조항과 그 치하의 제 13a-1 규정 및 13a-13 규정을 좇지 않았다.

III.

법집행부서가 낸 주장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공공 행정 소송이 제기돼 다음의 제반문제들을 판정해야 함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본다:

A. 앞의 제 II 항에 제시한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피고에게 줄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B.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의 제 II 항에 밝힌 피고와, 그리고 거래 조례 규정 제 12b-2 혹은 12g-3 에 따라서, 그의 여타한 후계자나, 그리고 피고들의 그 어떤 신규 주식회사의 명칭들에 대해서도, 거래 조례 제 12 조항에 준하여 등록된 각각의 제반 증권들의 등록을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일시 중지시키거나, 혹은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한지를 판정한다.

IV.

앞서 제 III 항에 열거한 의문사항들에 대한 증거를 채택하기 위한 공청회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위원회의 시행 법규 [17 C.F.R. § 201.110] 의 제 110 규정이 규정하는 바의, 행정법 판사가 지정되면, 그 판사 앞에서 열 것을, **이에 명령한다.**

위원회의 시행 법규 [17 C.F.R. § 201.220(b)]의 제 220(b) 규정이 규정하는 대로, 피고는 이 소장을 수취하는날로부터 열흘(10 일) 이내에 이 명령에 담겨있는 주장들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이에 더 나아가 명령한다.**

피고가 명령한 대로 답변을 제출하지않거나 혹은 청문회의 일정을 정식 통보받고도 청문회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피고와, 그리고 거래 조례 규정 12b-2 또는 12g-3 아래에 규정된 바의 그 어떤 후계자이든지, 그리고 피고의 신규 명칭의 주식회사는, 결석으로 간주되고, 소송은 피고에 반해서, 위원회의 시행 법규 [17 C.F.R. §§ 201.155(a), 201.220(f), 201.221(f), 및 201.310]의 규정 제 155(a), 220(f), 221(f), 그리고 제 310 이 규정한 바대로, 위원회가 고려한 바, 그 주장들이 맞다고 판결할지도 모른다.

이 명령은 이후 피고에게 사람이 직접 전달하거나 혹은 증명 확인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나, 혹은 속달 우편이나, 혹은 위원회의 시행 법규가 허락하는 여타 수단을 통해, 전달할 것이다.

행정법 판사는, 위원회의 시행법규[17 C.F.R. § 201.360(a)(2)] 의 제 360(a)(2) 규정에 준하여, 이 명령이 배달수취된 날짜로 부터 120 일 이내에 최초의 판결을 내릴 것을 이에 더나아가 명령한다.

적합한 권리포기가 없을 경우, 위원회의 그 어떤 임원이나 직원이 이 소송이나 혹은 이소송과 사실적으로 관련된 소송에서 조사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이 건의 판정에 참여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통보에 준하여 목격자나 혹은 법률고문으로 소송진행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소송진행은 행정 소송진행 조례의 제 551 조항이 의미하는 바의 “법규 제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위원회 조치의 시효 일자를 늦추는 것은 제 553 조항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Elizabeth M. Murphy
위원장